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87

발의연월일: 2025. 4. 16.

발 의 자:고동진・박덕흠・박충권

김성원 • 이인선 • 서일준

주호영 · 성일종 · 김예지

강승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세계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의 계절적특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전쟁등으로 각국에서는 LNG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
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난방과 전기를 위한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바, 이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 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.

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급이행 현황을 따져보면, 수요·공급 간의 오차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, 그 오차율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. 실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 율은 평균 3% 수준이었으나,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오차율은 16%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불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,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하여금 사전에 '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'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,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'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'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등).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전단 중 "정하여"를 "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자와 혐의를 거쳐"로 한다.

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(수급 적정성 평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가스도매사 업자가 수립한 수급계획과 실제 수요·공급 현황이 적정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과징금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수립한 수 급계획과 실제 수요·공급 간의 오차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오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, 부과 절차 및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·교환을 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물량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해당 물량의 정산 방식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공급규정) ① 가스도매사	제20조(공급규정) ①
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	
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	
(이하 "공급규정"이라 한다)을	
<u>정하여</u>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	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자
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을 받	와 협의를 거쳐
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	
또한 같다.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22조(수급 적정성 평가) ① 산
	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가스
	도매사업자가 수립한 수급계획
	<u>과 실제 수요·공급 현황이 적</u>
	정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
	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	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제23조(과징금) ① 산업통상자원
	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수
	립한 수급계획과 실제 수요ㆍ공
	급 간의 오차가 산업통상자원부
	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
	경우로서 그 오차가 고의 또는

제40조(조정명령 등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 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(調整) 을 명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 방법, 부과 절차 및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조정명령 등) ① -----

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·교환을 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물량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해당 물량의 정산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 략)